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2020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09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20208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완, 최유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방성훈, 신재연

변론 종결 2022. 11. 16.

판결 선고 2023. 1.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4가합4620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2 계산표 중 순번 '1027'부터 '1031'까지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계산표 '최종인용금액'란의

'총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① 'D'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G'란 기재 각 금원 중 각 155,236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각 2021. 5.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② 'G'란 기재 각 금원 중 각 1,496,502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2023. 1.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최종인용금액'란의 '총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D'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각 2023. 1.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원고별 청구금액 정리표'란의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2.부터, '2심 추가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21. 1. 12.부터 각 2021. 5.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판결문 제7, 8쪽에서 '선납 기간 이자'의 인정금액을 제1심과 달리 인정하였고, 위 변경으로 인하여 제1심판결상 위 인정금액을 기초로 하는 택지비 등 여러 계산식에서의 결론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원고별로 제1심판결 대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다소 증액되었고, '총인용금액'은 다소 감액되었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2 중 순번 '1027'부터 '1031'까지 해당 원고들의 실제분양가격 각 '88,020,000원'을 이 판결의 별지2에서 '89,520,000'원으로 각 수정함으로써 해당 원고들의 '총인용금액'은 다소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 이외에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제1심판결의 별지2는 이 판결의 별지2로 대체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6행부터 제5쪽 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16행의 '앞서 든 증거에' 다음에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20행의 '제41조 제5호'를 '제41조 제4항 제6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13행의 '본인'부터 제13쪽 15행의 '보이는 점'까지 부분을 '주택소유 여부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김해시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1행의 '않은 점' 다음에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2021.

12. 29.자 김해시 B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였음에도,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당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피고도 원고들 중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9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광고선전비, 전기시설 분담금,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등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이다1)]

○ 제1심판결문 제16쪽 18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1,703,395,437원 및 퇴직급여 102,245,300원, 감가상각비 4,396,555원, 광고선전비 70,000원을 건축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C B/L)에 관한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피고 주장의 위 부가가치세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금액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D B/L' 아파트의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갑 제2호증의 1)상 금액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실제 부가가치세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5행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제1심에서의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공사비 1,020,798,000원, 조경공사비 1,067,523,000원, 미술장식품 설치비 143,503,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축비감정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시점의 표준품셈 및 시중물가지 등을 적용하여 설계공사비를 산정한 후 낙찰률 및 실행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시점인 2003. 7.경 실제건축비를 추정한 것이다(미술장식품 설치비의 경우에는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 건축비감정 결과를 실제건축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 금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당시 도로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 .』

○ 제1심판결문 제18쪽 18행의 '15,515,665,380원에 매수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공임대 소송충당부채 계산내역(갑 제10, 11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금액이 14,217,600,361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김해시장 사이의 2001. 1. 3.자 용지매매계약 변경계약서 및 2001. 1. 19.자 용지매매계약정산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이 15,515,665,38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2. 12.경 작성된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출내역'(을 제4호증)에도 대지취득액이 15,515,665,3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금액이 15,515,665,38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표'부터 표 아래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계약금	2000. 7. 15.	837,000,000	1,057	103,014,061
2000. 10. 16.	837,000,000	964	93,950,383	
1회차(중도금)	2001. 1. 15.	1,303,522,720	873	132,503,977
2회차(중도금)	2001. 7. 15.	2,509,000,000	692	202,163,534
3회차(중도금)	2002. 1. 15.	2,509,000,000	508	148,409,068
4회차(중도금)	2002. 7. 15.	2,509,000,000	327	95,531,034
5회차(중도금)	2003. 1. 15.	2,509,000,000	143	41,776,568
6회차(잔금)	2003. 7. 15.	2,502,142,660	-	-

계약금	2000. 7. 15.	837,000,000	1,057	103,014,061
합계	15,515,665,380		817,348,625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선납 기간 이자 817,348,625원 중 이 사건 아파트 택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801,703,032\text{원}(= 817,348,625\text{원} \times 42,018\text{m}^2 \div 42,838\text{m}^2)$ 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인 2003. 7. 18.로부터 통상의 공사기간인 2년 이전인 2001. 5.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금 및 1회차 중도금만이 선납한 택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의 택지비에 관한 규정 중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의 (1) 부분"의 문언에 비추어, 위 표 기재와 같이 5회차 중도금까지를 선납한 택지비로 보고 선납 기간 이자를 가산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소결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는 16,020,369,354원(= 15,218,666,322원 + 801,703,032원)이다.』

○ 제1심판결문 제20쪽 7행부터 제20쪽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는 16,020,369,354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42,018㎡이며, 이 사건 아파트 20평형의 대지면적이 28.9746㎡, 23평형의 대지면적이 34.7870㎡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20평형의 택지비는 11,047,260원(= $16,020,369,354\text{원} \div 42,018\text{m}^2 \times 28.9746\text{m}^2$), 23평형의 택지비는 13,263,377원(= $16,020,369,354\text{원} \div 42,018\text{m}^2 \times 34.7870\text{m}^2$)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20평형의 세대당 43,189,815원(= 32,142,555원 + 11,047,260원), 23평형의 세대당 50,098,287원(= 36,834,910원 + 13,263,377원)이다.』

○ 제1심판결문 제21쪽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평형	43,189,815	19,000,000	365	23,352,000	24,087
365	24,519,600	-9,481			
365	25,745,580	-44,728			
365	25,745,580	-44,728			
365	26,517,940	-66,933			
365	27,843,830	-105,052			
365	28,957,580	-137,073			
365	30,115,880	-170,374			
365	31,320,510	-205,007			
365	32,886,530	-250,030			
23평형	50,098,287	26,000,000	145	34,530,850	-118,107
365	24,247,000	-4,275			
365	25,459,350	-39,130			
365	26,732,310	-75,728			
365	26,732,310	-75,728			
365	27,534,270	-98,784			
365	28,910,980	-138,364			
365	30,067,410	-171,612			
365	31,270,100	-206,189			
365	32,520,900	-242,150			
365	34,146,940	-288,898			
			145	35,854,280	-134,267

』

○ 제1심판결문 제22쪽 3행부터 제22쪽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건설원가는 20평형의 경우 34,834,953원(=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43,189,815원 + 자기자금이자 0원 - 감가상각비 8,354,862원), 23평형의 경우 40,523,734원(=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50,098,287원 + 자기자금이자 0원 -

감가상각비 9,574,553원)이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11행부터 제22쪽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은 20평형의 경우 70,551,712원[= (세대당 건설원가 34,834,953원 + 감정평가금액 106,268,471원) ÷ 2], 23평형의 경우 82,068,262원[= (세대당 건설원가 40,523,734원 + 감정평가금액 123,612,791원) ÷ 2]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11행부터 제26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가 16,020,369,354원이고 그 면적이 42,018m²이므로 20평형 세대별 택지비는 11,047,260원[= 16,020,369,354원 ÷ 42,018m² × 28.9746m²(세대당 대지면적)]이고, 23평형 세대별 택지비는 13,263,377원[= 16,020,369,354원 ÷ 42,018m² × 34.7870m²(세대당 대지면적)]이 되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비의 이자율은 연 2.875%, 임대기간은 10년 145일이므로(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이자율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산정가격은 20평형 95,042,012원[= 건축비 80,692,492원 + 택지비 11,047,260원 + 택지비 이자 3,302,260원{= 11,047,260원 × (10+145/365) × 2.875%}], 23평형 106,498,963원[= 건축비 89,270,882원 + 택지비 13,263,377원 + 택지비 이자 3,964,704원{= 13,263,377원 × (10+145/365) × 2.875%}]이다.

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이 사건 아파트 세대별 감가상각비가 20평형의 경우 세대당 8,354,862원, 23평형의 경우 세대당 9,574,55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산정가격에서 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20평형의 경우 86,687,150원(= 95,042,012원 - 8,354,862원), 23평형의 경우 96,924,410원(= 106,498,963원 - 9,574,553원)이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이 된다.

4)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20평형은 70,551,712원, 23평형은 82,068,262원으로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인 20평형의 86,687,150원,

23평형의 96,924,41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20평형의 경우 70,551,712원, 23평형의 경우 82,068,262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1, 2, 3층을 나머지 층수와 구별하여 저층세대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 2, 3층에 대하여 저층세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는 4층 이상에 대하여는 앞서 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되, 1, 2, 3층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약 94 내지 99%의 저층세대 할인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는 1, 2, 3층의 감정평가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저층세대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들의 2021. 12. 14.자 청구취지 및 동 원인 변경신청서 제16쪽, 2021. 12. 1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제9, 10쪽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피고가 2013. 12. 15.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을 제7호증의2 제5쪽 참조)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감정평가 결과는 1, 2, 3층과 나머지 층을 구분하여 각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수별로 단일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1, 2, 3층을 임의로 할인한 비율(할인비율을 산정하게 된 근거나 경위에 관한 별다른 주장, 증명도 없다)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의 전제가 되는 1, 2, 3층의 감정평가금액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 2, 3층의 감정평가금액을 달리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대금이 별지2 계산표 '실제분양가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계산표 중 순번 '1027'부터 '1031'까지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계산표

'최종인용금액'란의 '총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원금 기준 각 5,955,236원이다)인 'D'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24.부터, '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3.부터, 'G'란 기재 각 금원 중 각 155,236원3)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동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G'란 기재 각 금원 중 각 나머지 1,496,502원4)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동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최종인용금액'란의 '총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D'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24.부터, '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3.부터, '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동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판사오영상

별지

1)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자료도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 3)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5,955,236원에서 'D'란 기재 금원 및 'F'란 기재 금원의 합계
5,8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4) 'G'란 기재 각 금원(1,651,738원)에서 155,236원을 공제한 금액이다.